

---

천 곡 지 구    도 시 개 발 사 업  
환 경 영 향 평 가

---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2021. 12.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1. 사업의 내용

- 가. 사업명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 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산144-1번지 일원
- 다. 사업면적 : 363,051 m<sup>2</sup>
- 라. 사업기간 : 2021년 ~ 2025년
- 마. 사업시행자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바. 사업시행방식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 사. 승인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청
- 아. 협의기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 2.1 주민 등의 의견수렴 개요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작성, 공람·공고하고 의견청취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 가. 관할행정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청

**나. 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관계행정기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북구청

**다. 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1) 공고일자 : 2021년 10월 13일

**2) 공고방법**

- 신문 : 일간신문 1개사(서울경제), 지역신문 1개사(경상일보)
- 정보통신망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www.bukgu.ulsan.kr/nongso3)

3) 공람기간 : 2021. 10. 13 ~ 2021. 11. 22.(40일간)

4) 공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라. 주민설명회 개최**

- 본 사업의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1) 주민설명회 개최 개요**

가) 일 시 : 2021. 10. 28(목) 11:00

나) 장 소 : 쇠부리체육센터 지하1층 공연장(북구 천곡남로 86)

다) 주 관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라) 참석자 : 행정기관 담당자, 사업자, 용역사, 주민 참석

**2) 주민설명회 개최 시 주민의견**

- 주민의견 없음

울산광역시 북구청 공고 제2021 - 1249호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8조 규정에 따라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 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산144-1번지 일원
- 다. 사업면적 : 363,051㎡
- 라. 사업기간 : 2021년 ~ 2025년
- 마. 사업시행자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2.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기간 : 2021. 10. 13. ~ 2021. 11. 22.(40일간)
- 나. 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울산광역시 북구(도시과),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 공휴일 제외

**3. 설명회 개최**

- 가. 일시 : 2021. 10. 28(목) 11:00
- 나. 장소 : 석부리체육센터 지하1층 공연장(북구 천곡남로 86)
- 다. 내용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설명

**4. 주민의견 제출**

- 가. 의견제출 대상 :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 나. 의견제출 범위 : 당해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와 그 감소방안
- 다.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라 서면제출
- 라. 제출기한 : 공람기간 및 공람만료 후 7일 이내(2021년 11월 29일까지)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협조사항**

- 가. 설명회 개최 당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설명회장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 나. 설명회 참석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인적사항 및 체온 확인 후 설명회장 출입이 가능하며,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참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도시과 ☎052-241-79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2-1]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서울경제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 제16870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249호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8조 규정에 따라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나.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산144-1번지 일원  
다. 사업면적: 363,051㎡  
라. 사업기간: 2021년 ~ 2025년  
마. 사업시행자: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기간: 2021. 10. 13. ~ 2021. 11. 22. (40일간)  
나. 장소: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www.eiass.go.kr)  
울산광역시 북구(도시과)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 공휴일 제외

#### 3. 설명회 개최

가. 일시: 2021. 10. 28(목) 11:00  
나. 장소: 쇄부리체육센터 지하1층 공민장(북구 천곡남로 86)  
다. 내용: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설명

#### 4. 주민의견 제출

가. 의견제출 대상: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나. 의견제출 범위: 당해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와 그 감소방안  
다. 제출 방법: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라. 제출 기한: 공람기간 및 공람일 후 7일 이내(2021년 11월 29일까지)

####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협조사항

가. 설명회 개최 당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설명회장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나. 설명회 참석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인격사항 및 체온 확인 후 설명회장 출입이 가능하며,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참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도시과 ☎ 052-241-79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일보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 제9241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249호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8조 규정에 따라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나.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산144-1번지 일원  
다. 사업면적: 363,051㎡  
라. 사업기간: 2021년 ~ 2025년  
마. 사업시행자: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기간: 2021. 10. 13. ~ 2021. 11. 22. (40일간)  
나. 장소: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www.eiass.go.kr)  
울산광역시 북구(도시과)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 공휴일 제외

#### 3. 설명회 개최

가. 일시: 2021. 10. 28(목) 11:00  
나. 장소: 쇄부리체육센터 지하1층 공민장(북구 천곡남로 86)  
다. 내용: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설명

#### 4. 주민의견 제출

가. 의견제출 대상: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나. 의견제출 범위: 당해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와 그 감소방안  
다. 제출방법: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라. 제출기한: 공람기간 및 공람일 후 7일 이내  
(2021년 11월 29일까지)

####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협조사항

가. 설명회 개최 당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설명회장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나. 설명회 참석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인격사항 및 체온 확인 후 설명회장 출입이 가능하며,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참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도시과 ☎ 052-241-79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2-2]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신문공고



[그림 2-3] 정보통신망 공고(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그림 2-4] 정보통신망 공고(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찾기 사용자 매뉴얼

환경영향평가소개
사업초점
영역분계
국민참여
건강영향평가

**국민참여**  
Public participation

참여진행현황

평가항목 결정내용 공람

**평가서 초안 공람**

영정서분류현황

사용자지원

### ◆ 평가서 초안 공람 - 환경영향평가

사업개요

사업명	현대사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현대사구도시개발사업조합
사업구분	도시개발
사업지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천마동 천마공원 2차 신144 1면지 일대
승인권	울산광역시 북구
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안100. 도시 및 계획안.pdf</li> <li>18.안100.환경영향.pdf</li> <li>18.안11. 요약본.pdf</li> <li>18.안100. 대안성립 및 평가.pdf</li> <li>18.안111.환경영향평가 및 검토.pdf</li> <li>18.안117. 현대사구개발사업기안서(안) 반영여부.pdf</li> <li>18.안113.1-13.2.3 부속-1.pdf</li> <li>18.안113.2.4 부속-2.pdf</li> <li>18.안113.3-13.7 부속-3.pdf</li> <li>18.안10. 사업기안서.pdf</li> <li>18.안11. 환경영향평가 대안성립의 검토.pdf</li> <li>18.안14. 지역계획안.pdf</li> <li>18.안10. 용역분위 및 용역 범위결과.pdf</li> <li>18.안10. 1.1 용역결과.pdf</li> <li>18.안10. 1.2 자연유산지선.pdf</li> <li>18.안10. 2.3 개안.pdf</li> <li>18.안10. 2.2 대기질결과.pdf</li> <li>18.안10. 2.3 온실가스결과.pdf</li> <li>18.안10. 3.1 수질(수역)조사결과.pdf</li> <li>18.안10. 4.1 토지이용결과.pdf</li> <li>18.안10. 4.2 도형결과.pdf</li> <li>18.안10. 4.3 지형지질결과.pdf</li> <li>18.안10. 5.3 환경영향평가대안성립결과.pdf</li> <li>18.안10. 2.3 소음진동결과.pdf</li> <li>18.안10. 5.2 교통결과.pdf</li> <li>18.안10. 5.4 영토계획결과.pdf</li> <li>18.안10. 6.1 연구 및 수거결과.pdf</li> <li>18.안17. 공람에 제하는 행정의 재검토안 및 사유(환경영향평가보고서)201802.pdf</li> <li>18.안10. 용역분위 및 용역 범위결과.pdf</li> <li>18.안10.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편익소멸 피해 및 대책결과.pdf</li> <li>18.안10. 6.1.1.pdf</li> <li>지역계획안201802.pdf</li> </ul>

초안공람
주민의견수렴

초안 공고일	2021.10.13
초안 공람 기간	2021.10.13 - 2021.11.22
공람 장소	울산광역시 북구 중대역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울산광역시 북구(도시과), 동스마트 행정복지센터
접영의 장소	사우스해곡재터 4차1층 국민청원(북구 천마동 2층)
접영의 일시	2021.10.28(목) 11:00
의견 제출 기간	2021.10.13 - 2021.11.29

[그림 2-5] 정보통신망 공고(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6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업명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사업지역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산 144-1번지 일원					
사업시행자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개최일시	2021년 10월 28일(목) 11:00					
개최장소	울산광역시 북구 쇠부리체육센터 지하1층 공연장					
참석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방문시간	체온(℃)	개인정보수집동의	서명
박기환	[Redacted]	[Redacted]	10:29	35.1	✓	[Signature]
김혜원			10:29	36.1	✓	[Signature]
이재정			10:44	35.6	✓	[Signature]
김영재			10:44	36.4	✓	[Signature]
장진숙			"	36.1	✓	[Signature]
김민경			10:50	35.1	✓	[Signature]
배우송			10:52	36.5	✓	[Signature]
김미경			10:57	36.4	✓	[Signature]
박재민			"	36.2	✓	[Signature]
김영미			10:58	35.8	✓	[Signature]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업명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사업지역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산 144-1번지 일원					
사업시행자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개최일시	2021년 10월 28일(목) 11:00					
개최장소	울산광역시 북구 쇠부리체육센터 지하1층 공연장					
참석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방문시간	체온(℃)	개인정보수집동의	서명
김강영	[Redacted]	[Redacted]	10:45	36.3	✓	[Signature]
김유진			10:45	36.0	✓	[Signature]
권진호			10:51	35.4	✓	[Signature]
조민경			"	34.7	✓	[Signature]
권혜숙			"	35.8	✓	[Signature]
이신경			10:58	35.9	✓	[Signature]
신영미			"	36.0	✓	[Signature]
윤선근			11:00	36.4	✓	[Signature]
김영록			"	35.8	✓	[Signature]

[그림 2-3]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마. 의견제출 주민, 전문가 및 관계행정기관**

**1) 주민**

- 의견제출 주민 없음

**2) 의견제출 관계행정기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과,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위생과

**3)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 <표 2-1> 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결과에 요약정리하고 본안 반영여부를 제시하였음

**[표 2-1] 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결과**

구 분	초안 검토의견	반영내용 (미반영사유)	비 고
낙동강 유역 환경청	1.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업은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산144-1번지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동 검토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업은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산144-1번지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동 검토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본안 보고서를 작성하였음.</li> </ul>	반 영
	2. 항목별 검토의견		
	가. 동·식물상		
	<p>&lt;훼손수목 추가 이식&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생종을 중심으로 훼손수목량의 최소 10% 이상 수목을 사업부지 내부 공원녹지에 이식·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li> <li>- 가이식장 위치·규모, 이식대상지·시기 등 훼손수목 이식계획 사전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지역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시굴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훼손수목의 이식은 불가능하나, 훼손수목량의 10% 이상의 수목량을 온실가스 저장 및 흡수량이 많은 자생종을 식재토록 할 계획임.</li> </ul>	미반영
	<p>&lt;생태영향저감시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부지 산림 경계부를 따라 배수로 등의 설치 계획을 도면에 제시하고, 계획된 배수로 등에는 소형동물 접근방지 및 탈출을 위한 울타리, 생태축구 또는 덮개 등 생태영향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함.</li> <li>- 생태축구를 설치할 경우 소형동물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생태축구 간 이격거리는 최대 20m 이내로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부지 산림 경계부 배수로 설치 계획 도면을 제시하였으며, 유도울타리, 생태축구 또는 덮개 등 생태영향저감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음.</li> </ul>	반 영

[표 2-1] 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결과(계 속)

구 분	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 고
낙동강 유역 환경청	<p>&lt;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은 공사 시 및 운영 시의 조사항목, 조사지점 및 조사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또한 동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생태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협의된 보전 및 저감대책이 적정 이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아래의 사항들을 추가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은 공사 시 및 운영 시의 조사항목, 조사지점 및 조사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으며,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시하였음.</li> </ul>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공사 시, 운영 시 조사계획(조사지점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시 및 운영 시 조사계획(조사지점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시하였음</li> </ul>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시기는 환경영향평가 현황조사 시기와 최대한 유사한 시기에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시기는 환경영향평가 현황조사 시기와 최대한 유사한 시기에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음</li> </ul>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중 우기 시에는 토사유출로 인한 수계영향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의 관리현황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중 6월~9월(우기)은 월 1회 저감시설 관리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였음</li> </ul>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경시설, 공원·녹지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계획에 따라 조성되고 있는지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환경영향조사 내용에 조경시설, 공원·녹지계획에 따른 시행여부를 포함하였음</li> </ul>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보호종의 서식·출현 변화에 관한 조사결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환경영향조사 내용에 법정보호종의 서식·출현 변화에 관한 조사결과를 포함하였음</li> </ul>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법정보호종 서식·출현 변화에 따른 추가 보전대책 또는 저감대책 수립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환경영향조사 내용에 법정보호종 서식·출현 변화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추가 보전대책 또는 저감대책 수립 여부를 포함하였음</li> </ul>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화(경관녹지, 완충녹지 등)공정 현황 및 공정률 조사결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화(경관녹지, 완충녹지 등)공정 현황 및 공정률 조사결과를 제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음</li> </ul>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된 생태영향 저감시설 설치 현황 및 온전한 기능 수행 여부 조사결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영향 저감시설 설치 현황 및 온전한 기능 수행 여부 조사결과를 제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음</li> </ul>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간조명 설치 현황 및 빛공해로 인한 생태영향 발생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간조명 설치 현황 및 빛공해로 인한 생태영향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li> </ul>	반 영

[표 2-1] 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결과(계 속)

구 분	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계교란야생식물을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별도의 조사항목으로 설정하고, 공사 시 분기 1회 이상, 운영 시 반기 1회 이상 조사</li> <li>※ 사후환경영향조사 통보서에 수록되는 조사결과는 최초 1차년도부터 해당 기간까지의 모든 연차별 조사결과를 수록하고, 발생된 영향에 의한 각 연도별 야생동·식물(법정보호종 포함)의 서식·출현 변화와 변화 양상 등에 관한 분석·예측 결과가 각종의 표와 그래프와 같이 정량적인 형식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기 협의된 저감대책과 보전대책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추가 대책 수립 등이 통보서에 잘 나타나도록 작성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계교란야생식물을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별도의 조사항목으로 설정하였고 조사시기를 공사 시 분기 1회, 운영 시 반기 1회 조사로 계획하여 제시하였음</li> </ul>	반 영
낙동강 유역 환경청	나. 대기질·악취		
	<p>&lt;산단 영향을 검토한 토지이용 계획 수립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지구 서측으로 배치한 단독 주택지는 인접하여 위치하는 달천농공단지와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이 우려되는바 변경(준거지역→단독주택지)에 따른 저감방안(완충녹지 확대, 산단내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악취물질 제한)외 금회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적정 여부,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추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지구 서측으로 배치한 단독 주택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적정 여부,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추가 대책을 제시하였음.</li> </ul>	반 영
	<p>&lt;공사 시 강화된 저감방안&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부지 인근으로 다수의 주거시설, 교육시설 등이 인접하여 위치하므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강화된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li> <li>- 등하교시간 고려한 장비 운영, 주거시설 인접구간 집중 살수(살수차량 추가운영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아래에 제시된 의견을 고려하여 강화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li> <li>- 등하교시간을 고려한 장비 운영 및 주거시설 인접구간 집중 살수</li> </ul>	반 영  반 영

[표 2-1] 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결과(계 속)

구 분	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장 내 1일 이상 방치 나대지는 전면 방진덮개, 대기환경기준 초과, 미세먼지 나뭇 발생 시 공사 중단 등 비산먼지 관리방안 수립</li> <li>- 사업부지 인접 도로변에 공사차량으로 침적된 비산먼지 재비산 방지 관리방안 수립</li> <li>- 최근 연식의 건설장비 활용 계획 수립으로 NOx 배출 최소화</li> <li>- 유지목표농도는 영향예측 결과를 활용하여 적정 수준으로 수립</li> <li>- 방진망 설치 위치, 높이 등 구체적인 제원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구간 내 발생 비산먼지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li> <li>- 사업부지 인접 도로변에 공사차량으로 침적된 비산먼지 재비산 방지 관리방안 수립하여 제시하였음</li> <li>- 공사시 최근 연식의 건설장비를 활용토록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li> <li>- 유지목표농도는 PM-10과 NO<sub>2</sub>의 경우 대기환경기준의 24시간 기준의 90%를 설정하여 제시하였음</li> <li>- 방진망 설치 위치, 높이 등 구체적인 제원 제시하였음</li> </ul>	<p>반 영</p> <p>반 영</p> <p>반 영</p> <p>반 영</p> <p>반 영</p>	
	<p>&lt;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 사업부지 서쪽 지구 단독주택지를 지점에 추가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 사업부지 서쪽 단독주택지를 사후환경영향 조사지점에 추가하였음.</li> </ul>	<p>반 영</p>	
	<p>낙동강 유역 환경청</p>	<p>다. 온실가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부지 내 수목 식재 시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에 서식하는 수종을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온실가스 저장 및 흡수량이 많은 자생종*을 선정하여 식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li> <li>- 식재 밀도 강화 및 다층구조(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구성)로 식재</li> <li>* 신갈나무,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느티나무, 뽕나무류, 단풍나무류, 서어나무, 소나무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부지 내 수목 식재 시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에 서식하는 수종을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온실가스 저장 및 흡수량이 많은 자생종*을 선정하여 식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li> </ul>	<p>반 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옥상, 유희 부지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에너지 고효율 설비(절전·절수기, LED 조명 등) 확충 등을 포함한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에너지 고효율 설비(절전·절수기, LED 조명 등) 확충 등을 포함한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시하였음.</li> </ul>	<p>반 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실가스 배출량을 재산정하여야 함.</li> <li>- 휘발유, 경유, 부탄 순발열량(6.2-141p &lt;표6.2.3-32&gt;) 환산시 에너지법 시행규칙('17.12.28 개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제7차, '17)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실가스 배출량을 아래의 사항을 확인한 후 재산정하여 제시하였음.</li> </ul>	<p>반 영</p>		

[표 2-1] 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결과(계 속)

구 분	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분뇨 발생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계수 18.9(6.2-135p, &lt;표 6.2.3-19&gt;) 산정시 배출량에 300으로 재산정</li> <li>- 교목침엽수 CO2흡수량(6.2-148p, &lt;표6.2.3-46&gt;) 산정결과가 주석과 다름, 재확인</li> </ul>		
낙동강 유역 환경청	라. 수질		
	<p>&lt;공사중 토사유출 저감대책&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감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내 토양의 입도분석 및 침사지 저감효율, 수용하천의 부유물질농도 영향예측 등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추가 저감방안 필요시 침사지 확장(다단 침사지 포함), 오탁방지막 등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li> <li>- 입도분석결과 토사의 80% 이상을 저감할 수 있도록 계획, 침사지 설계빈도 및 제원 제시</li> <li>- 가배수로 제원 제시(홍수 소통량 규격 만족 여부, 위치를 저감시설 위치도에 표기 등)</li> <li>- 오탁방지막을 설치할 경우 위치를 수계현황도 표기</li> <li>- 수용하천의 상류 수질을 고려하여 부유물질 목표수질 농도 설정</li> <li>- 목표농도 초과 시 원인 분석을 통해 추가저감대책 수립</li> <li>※ 토사유출량 산정 시 평가서에서 적용한 원단위법은 토지이용상태만을 고려하여 토사유출량을 개략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임. 사업규모를 고려할 때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수정범용토양손실공식(RUSLE) 방법을 이용하여 토사유출량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중 토사유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저감시설(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및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li> <li>- 토사의 80% 이상을 저감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침사지 설계빈도 및 제원 제시하였음</li> <li>- 가배수로 제원 제시(홍수 소통량 규격 만족 여부, 위치를 저감시설 위치도에 표기 등)을 제시하였음</li> <li>- 현장상황을 고려한 결과 오탁방지막은 설치하지 않음</li> <li>- 부유물질 목표수질 농도 설정하여 제시하였음</li> <li>- 목표농도 초과 시 원인 분석을 통해 추가저감대책 수립토록 하겠음</li> </ul>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p>&lt;용수공급계획 및 오수처리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로 인해 대량의 필요 생활용수(2,333m<sup>3</sup>/일) 및 오수발생(2,053m<sup>3</sup>/일)이 예상되므로 해당 구역 시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구역 시설(정수장, 배수지, 공공하수처리장 등)의 공급·처리량, 여유용량, 향후 구역 내 개발</li> </ul>	부분반영

[표 2-1] 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결과(계 속)

구 분	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 고	
낙동강 유역 환경청	수장, 배수지, 공공하수처리장 등)의 공급·처리량, 여유용량, 향후 구역 내 개발계획 변화 등을 조사하고, 사업완료 시기를 고려하여 지자체로부터 발생 오·폐수처리 가능 여부 협의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계획 변화 등을 조사하여 제시하였으며, 오수처리 가능 여부 협의는 실시계획 인가 절차에 따라 진행중에 있음.		
	<홍수유출량 저감대책> ◦ 홍수유출량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포함하여 사업 전중후 홍수발생량을 산정·제시하고, 저류지 등 저감시설물 설치로 인한 홍수량 저감효과를 정량적(홍수수문곡선 포함)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실무지침(행정안전부, '17)에 의하면 합리식, 유역추적법(Clark), 무차원단위도법(NRCS) 등을 적용하여 홍수량이 크게 산정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	◦ 홍수유출량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포함하여 사업 전중후 홍수발생량을 산정·제시하였고, 저류지 등 저감시설물 설치로 인한 홍수량 저감효과를 정량적(홍수수문곡선 포함)으로 제시하였음.	반 영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공사 및 운영 시 수질조사항목에 TOC, T-P(하천 생활환경기준) 추가하여야 함.	◦ 공사 및 운영 시 수질조사항목에 TOC, T-P(하천 생활환경기준) 추가하였음.	반 영	
	◦ 부지정지 공사 시 수질 조사시기는 우기(6~9월)에 월 1회 측정하는 것을 포함, 주기적으로 침사지 제거효율을 조사(육안검사 또는 수질분석)하여 토사유출로 인한 수용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부지정지 공사 시 사업지구의 수질 조사 시기는 우기(6~9월)에 월 1회 측정을 계획하고, 임시침사지의 경우 운영상태(육안검사)를 실시토록 계획함.	반 영	
	◦ 운영 시 LID 시설(저류지 등) 적정 설치 및 유지·관리 여부를 사후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운영 시 LID 시설(저류지 등) 적정 설치 및 유지·관리 여부를 사후 계획에 반영하여 제시하였음.	반 영	
	마. 지형·지질			
	<지형훼손 최소화> ◦ 사업부지 북서측에서 중앙부로 이어지는 산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경관 녹지 및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들 공원·녹지와 인접한 도로 개설 및 종교시설 등의 부지조성으로 인하여 대규모 절토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도로변으로 대규모 절토사면이 발생하고 있어 지형훼손과 더불어 공원으로의 접근성 제한 등의 영향이 예상	-	-	

[표 2-1] 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결과(계 속)

구 분	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 고	
낙동강 유역 환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또한 토공량으로 산정된 지형변화지 수 값이 일반적인 면적개발사업에 비하여 다소 높은 값을 보이고 있어 개발면적에 비하여 훼손 규모가 큰 것으로 판단됨</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따라서 사업부지 중앙부의 공원·녹지에 대해 자연지형을 보전할 수 있도록 도로계획의 조정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불어 토공량을 축소할 수 있도록 부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원구역의 사면계획 변경을 통하여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음</li> </ul>	부분반영	
	<p>&lt;지형변화 예측&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평가서(초안)에 제시된 대횡단면도에 따르면 공원·녹지 주변으로 도로 및 종교시설부지로 인하여 대규모 절토 및 절토사면이 발생(6.4-79p~6.4-81p)하고 있으나 정지계획평면도(6.4-77p)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지계획 평면도를 수정하여 제시하였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따라서 절·성토사면, 보강토 옹벽 위치를 지도에 정확히 표시*하고, 지구 단면도를 세분화하여 사면고 및 사면길이 등을 제시하여야 함.</li> <li>- 주요 절·성토 구간에 대해 횡단면도를 작성하고 절·성토사면의 높이를 명시</li> <li>- 지구 단면도는 가독성 있는 크기로 제시</li> <li>- 공사계획평면도, 단면도에 사면보호공법, 구조물계획을 확인 가능하도록 구별 표시</li> <li>- 보강토 옹벽에 대한 경관상 저감방안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절·성토사면, 보강토 옹벽 위치를 도면에 표지하여 제시하였고 지구 단면도를 세분화하고 사면고 및 사면길이를 제시하였음.</li> <li>- 주요 절·성토 구간에 대해 횡단면도 및 절·성토사면의 높이를 명시하여 제시하였음</li> <li>- 지구 단면도는 가독성 있는 크기로 제시하였음</li> <li>- 공사계획평면도, 단면도에 사면보호공법, 구조물계획을 확인 가능하도록 구별 표시하였음</li> <li>- 보강토 옹벽에 대한 경관상 저감방안 제시하였음</li> </ul>	반영 반영 반영 반영	
	<p>바. 친환경적 자원순환</p>			
	<p>&lt;운영 시 생활폐기물 처리계획 수립&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번 계획은 사업면적이 363,051㎡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 해당 여부를 제시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 법령의 해당 여부를 제시하였음.</li> </ul>	반영	

[표 2-1] 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결과(계 속)

구 분	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 고
낙동강 유역 환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토지이용계획, 대기질·악취, 위생공중보건 등 다수의 항목에서 추가적인 영향예측 및 저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본 단계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시설의 설치·운영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계획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처리계획 수립 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 실시 여부를 제시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입지정보 및 설치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영향에 대하여 추가 검토하여야 함.</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측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의 설치·운영 비용을 관할 지자체로 납부할 계획일 경우 「폐측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 「폐측법」 제6조제2항 적용 대상 사업임을 증빙하여야 함</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측법」 제6조제2항의1에 대한 근거는 관할 내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용량, 최근 3년간 처리량 및 사업 운영연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 추가량의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유무를 제시</li> <li>· 「폐측법」 제6조제2항의2에 대한 근거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처리가능여부를 관할 지자체장의 확인서 제시</li> <li>· 「폐측법」 제6조제2항의3에 대한 근거는 관할 지자체의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자원순환실시계획 상 추가 조성예정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계획서 제시</li> <li>· 「폐측법」 제6조제2항의4에 대한 근거는 관할 지자체 장의 폐기물처리시설 추가 조성 불필요성에 대한 확인서 제시</li> </ul>		

[표 2-1] 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결과(계 속)

구 분	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 고
낙동강 유역 환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만 구체적인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금번 사업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을 예상하기 힘들 경우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폐촉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이행 여부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 사업이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사업인지 여부를 파악하여 제시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법령 검토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음.</li> </ul>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또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7-175호)」에 따른 순환골재 의무사용 용도 및 사용량을 제시하여야 함.</li> </ul>	-	-
	사. 소음·진동		
	<p>&lt;도로교통소음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음도가 환경목표기준을 초과하고 있어(6.5-52~53p) 거주자의 장기적인 소음 피해여부를 좀 더 상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3차원 소음예측을 통해 지형, 건축물 형상(직각배치 포함), 방음벽 형태 등의 제반여건이 포함된 정확한 예측을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li> <li>- 3차원 소음예측 결과는 각 수음점의 주야간 예측결과 및 평/단면 소음지도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차원 소음예측을 실시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li> </ul>	반 영
	<p>&lt;공장소음에 대한 환경목표기준 설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장에 대한 환경목표기준의 경우 생활소음 규제기준 중 주거지역의 공장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함</li> <li>- 주거지역→공장 기준인 주간 55dB(A), 야간 45dB(A) 이하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장에 대한 환경목표기준을 주간 55dB(A), 야간 45dB(A) 이하로 적용하여 영향예측을 실시하였음.</li> </ul>	반 영
	<p>&lt;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시 사업부지 서쪽 지구 단독주택지를 지점에 추가 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사업부지 서쪽 지구 단독주택지를 지점에 추가하였음.</li> </ul>	반 영

[표 2-1] 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결과(계 속)

구 분	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 고
낙동강 유역 환경청	아.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조망점에서 보이는 경관의 유형을 구별하고 스카이라인(7부 능선 표시), 건축물의 높이 값 표시, 절성토 발생 위치 등 훼손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조망점에서 보이는 경관의 유형을 구별하여 제시하였으며, 스카이라인(7부 능선 표시), 건축물의 높이 값 표시, 절성토 발생 위치 등 훼손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를 제시하였음.</li> </ul>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경 조망점 추가(도시개발사업부지 남서측 위치인 조망점①과 조망점②사이, 사업부지 북서측 위치인 조망점①과 조망점③ 사이, 그리고 대지 북동측위치인 조망점③과 조망점⑤ 사이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경 조망점 3곳을 추가하였음.</li> </ul>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경축 계획을 검토할 수 있는 조망점이 없으므로 조망점 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경축 계획을 검토할 수 있는 조망점을 추가하였음.</li> </ul>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조망점별 지형분석을 실시하여, 가시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망점별 지형분석을 실시하고, 가시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제시하였음.</li> </ul>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시행 전의 산림 선형과 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선형의 변화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시행 전의 산림 선형과 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선형의 변화 제시하였음.</li> </ul>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시물레이션을 저감방안 반영·작성하여 저감방안 효과 경관 분석자료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시물레이션을 저감방안 반영·작성하여 저감방안 효과 경관 분석자료 제시하였음.</li> </ul>	반 영	
자. 위생·공중보건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주택단지와 일반산업단지 사이에 완충녹지 확대 및 모바일테크벨리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주 제한 등을 계획하여(12-2p) 산업시설 배출물질로 인한 건강위해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음</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개발구역 내 주택단지에서의 건강위해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개발·운영 시에 발생 가능한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중심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바일테크벨리 일반산업단지 운영 시 발생 가능한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선정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li> </ul>	반 영	

[표 2-1] 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결과(계 속)

구 분	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 고
낙동강 유역 환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지 입주 시부터 산업단지 개발·운영 시 평가 대상물질 중심의 모니터링 및 위해도 기준 만족여부 확인</li> <li>- 모니터링 대상물질 측정결과를 입주민이 확인하고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평가 대상물질 중심의 모니터링 및 위해도 기준 만족여부 포함하여 수립하였음.</li> <li>-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조사결과를 비치하여 입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li> </ul>	반 영
	3.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결과를 표로 작성 시 반영내용을 요약·제시(단순히 ‘검토하였음’, ‘반영하였음’ 표현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함.</li> <li>- 초안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달라진 사항은 별도로 정리·제시(표, 그림 등)</li> <li>- 반영/미반영을 표시하고, 미반영시 타당한 사유를 설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결과를 표로 작성 시 반영내용을 요약·제시하였음.</li> <li>- 검토의견 반영결과를 표로 자거성하여 제시하였음</li> <li>- 반영/미반영을 표시하고 사유를 제시하였음</li> </ul>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생태환경 및 환경질 조사에 대한 증빙자료는 누락 없이 첨부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빙자료를 누락 없이 첨부하여 제시하였음</li> </ul>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18-205호)’ [별표6]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li> <li>- 항목7. 1. 자연생태환경분야 중 탐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 지역생태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3인 이상 탐문조사를 실시하고, 탐문조사 결과 법정보호종 등 주요종에 관한 사항은 현지조사를 재실시하여야 함.</li> </ul> </li> <li>- 항목7. 2. 대기환경분야 중 대기질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조사는 최소 2계절 이상, 계절별 3일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뢰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기존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18-205호)’ [별표6]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였음.</li> </ul>	반 영

[표 2-1] 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결과(계 속)

구 분	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 고
낙동강 유역 환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조사방법 및 작성양식’에 따르면 현지조사는 대상지 주변 500m 이내 지역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주요 습지 및 철새도래지 등이 포함될 경우 이를 조사범위에 포함하여 식물상 및 식생 조사를 실시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식생보전등급 등 조사결과를 제시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조사방법 및 작성양식’에 따라 동식물상조사를 시행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음.</li> </ul>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조사방법 및 작성양식’에 따라 포유류 및 조류 조사범위를 적정하게 설정·조사하여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조사방법 및 작성양식’에 따라 포유류 및 조류 조사범위를 적정하게 설정·조사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제시하였음.</li> </ul>	반 영
울산 광역시 지역 개발과	□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사업은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산 144-1번지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li> </ul>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 수립된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 수립된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음.</li> </ul>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시행으로 인해 공사시 공사장비 및 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생활의 환경피해를 저감하고, 운영시 유발교통에 의한 사업부지 내 소음에 대한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시행으로 인해 공사시 공사장비 및 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운영시 유발교통에 의한 사업부지 내 소음에 대한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li> </ul>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주택의 건축물의 경우 기존 스카이라인을 고려하고, 통경축을 확보토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주택의 건축물의 경우 기존 스카이라인을 고려하고, 통경축을 확보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음.</li> </ul>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0-289호)」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0-289호)」을 준수하여 작성하였음.</li> </ul>	반 영

[표 2-1] 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결과(계 속)

구 분	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 고
울 산 광역시 환경 정책과	<p><b>【검토 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0-289호, 2020.12.22.)」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0-289호, 2020.12.22.)」을 준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였음.</li> </ul>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외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외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음.</li> </ul>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과 관계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의견수렴 과정 및 내용, 이에 따른 조치사항 또는 조치계획을 평가서 본안에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영향평가 본안 보고서에 의견수렴 과정 및 내용, 이에 따른 조치사항 또는 조치계획을 제시하였음.</li> </ul>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개발사업 등 도시화에 따라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여 홍수유출량 증가, 하천 건천화, 지하수위 저하, 도심열섬화 등 자연적인 물순환 체계를 변화시켜 치수, 이수,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85백분수 일 때의 강우량(25mm) 및 강우강도(4.2mm/hr)를 전체 물순환 목표량으로 설정하였는바, 사업 시행 시 빗물을 직접 유출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하도록 하여 하천의 수질개선 및 가뭄·홍수 등에도 대응하도록 하는 분산식 빗물관리 기법인 저영향개발기법(LID)을 적용하여 우리 시 물순환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li> <li>- 보행자 도로, 주차장 등 포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수 블럭 등 투수성 또는 다공성의 친환경적 포장재료 사용</li> <li>※ 환경영향평가서 저영향개발(LID) 기법 적용 매뉴얼('13. 7월, 환경부), 건강한 물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가이드라인('13. 4월, 환경부) 참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빗물의 토양 투수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지역내 보행자도로는 투수 블럭으로 계획하고, 침투통 등의 저감시설을 설치토록 계획하였음.</li> </ul>	반 영

[표 2-1] 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결과(계 속)

구 분	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지역 주변 문헌조사(제4차 전국 자연환경조사, 2016-2017년도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결과 법정보호종(수달, 담비, 삿, 황조롱이 등)이 확인되므로 법정보호종 분포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자연생태 현지조사는 2021.8.20.일 하루 동안 조사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분하여 계절별로 충분히 조사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상 조사의 경우 생육이 왕성한 시기인 여름 및 가을철 현지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이외의 계절은 문헌조사로 대체하여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법정보호종 분포여부 등을 제시하였음</li> </ul>	반 영
울 산 광역시 환경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상처를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고 야생조류를 보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제 4조 제2항에 따른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또는 충돌 저감 방음벽·건축물 디자인 적용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실시</li> </ul> </li> <li>◦ ※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2019.5. 환경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시행후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소음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방음벽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설치되는 방음벽의 경우 투명방음벽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식물상 평가항목의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 시에도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여부를 면밀하고 꾸준히 조사하여, 서식이 확인되면 서식지 보존 또는 대체 서식지 확보 등의 서식환경영향저감 대책 등을 필히 강구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체 서식지 조성 시 이주개체군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체서식지 유지관리계획(관리주체, 관리비용, 관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시행</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환경영향조사 내용에 법정보호종의 서식여부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보전대책 또는 저감대책 수립 여부를 강구하였음.</li> </ul>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 사업 이므로 같은 법 제47조제1항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인허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정책과로 통보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법령에 따라 생태보전협력금을 산정한 후 인허가(승인)후 20일 이내에 통보토록 하겠음.</li> </ul>	반 영

[표 2-1] 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결과(계 속)

구 분	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 고
울 산 광역시 북 구 환 경 위 생 과	<b>【종합 의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 방안과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예측치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저감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 방안과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예측치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저감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음.</li> </ul>	반 영
	<b>【항목별 환경영향 검토 의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기분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 시 분체상 물질을 야적하는 경우 반드시 방진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지역에 날림먼지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진시설(방진벽, 살수시설 등) 설치, 토사운반차량 저속 운행 등 저감 방안을 철저히 수립·이행하여야 하고, 공사장비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삼가하고 대기오염을 방지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 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방진덮개 사용 및 방진시설(방진벽, 살수시설 등)설치, 토사운반차량 저속 운행 등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였고, 공사장비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삼가하고 대기오염을 방지로 계획 수립하여 제시하였음.</li> </ul>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근 달천농공단지, 모바일테크산업단지 운영으로 인한 사업지구에서 미치는 대기질 등의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시 산업단지와 인근한 주거지역을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으로 추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li> </ul>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2020.4.3.) 울산광역시 전 지역이 대기관리지역에 해당되므로, 공사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li> </ul>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양 및 지형지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절·성토로 인한 지형변화와 토사유출 대책, 토공량 발생 최소화 등 사면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사면 보호공법을 수립·시행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절·성토로 인한 지형변화와 토사유출 대책, 토공량 발생 최소화 등 사면안정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였고 사면 보호공법을 수립·시행 제시하였음.</li> </ul>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시행 중 토지가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토양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사항이 발생할 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계획하였음.</li> </ul>	반 영

[표 2-1] 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결과(계 속)

구 분	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 고
	경보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토양 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하여야 함.		
	◦ 수질분야		
울 산 광역시 북 구 환 경 위생과	- 사업 시행 시 토사유출, 우수 및 비점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에 관한 저감 방안 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 차량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유 등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공사현장 내 공사장비 폐유, 엔진오일 등 유류 교환 시 정비소 적극 활용 · 현장 교체작업 시 지정폐기물 보관 및 처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처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유류 하천유입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방제장비 구비계획 및 비상연락망, 신고기관, 방제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우기 시 공사 지양, 가배수로, 침사지 설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토사유출 대책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공사시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를 설치하여 인근 수계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으며, 공사 시 차량 등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	반 영
	- 공사 시 현장사무소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대하여 오수관로 연결 또는 오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고, 사업 추진 중 및 종료 후, 강우 시에도 처리되지 않은 오·폐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공사 시 현장사무소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대하여 오수관로 연결하여 사용토록 계획하였음.	반 영
	◦ 동·식물상		
	- 사업 시행으로 인한 식생 변화와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야생동물의 서식처에 대한 혼란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감 방안을 철저히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 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변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	반 영

[표 2-1] 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결과(계 속)

구 분	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 고	
울 산 광역시 북 구 환 경 위 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부지 문헌 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수달, 삿갓 등이 확인된 바,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출현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피해방지 및 보호를 위한 별도의 추가 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및 운영시 계획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으며, 사업지역내 주변지역에 멸종위기종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피해방지 및 보호를 위한 별도의 추가 저감 대책을 수립토록 계획하였음.</li> </ul>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음·진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음 진동도 예측결과 대부분 환경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소음도의 경우 소음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야간시간 인근 주거지역 및 야생동·식물 서식지에 대해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한 세밀한 조사 및 방음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음 진동도 예측결과에 따른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지역 인근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사 장비 및 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음, 방진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 환경피해 저감 방안을 철저히 수립·시행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공사 장비 및 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거지역 인근은 가설 방음판넬 설치 및 작업시간 제한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조환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계획(건축물 높이, 배치, 면적)에 따라 주변 일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으나, 향후 건축계획 수립시 계획지구 내 건축물로 인한 주변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으로 인한 주변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의 일조영향을 분석하고, 적절한 저감대책(공동주택의 층수 및 배치 조정 등)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li> </ul>			